

계 약 요 강

제정 : 1992. 7. 7.
제1차 개정 : 1993. 12. 18.
제2차 개정 : 1997. 3. 26.
제3차 개정 : 2010. 7. 21.
제4차 개정 : 2012. 11. 14.
제5차 개정 : 2014. 2. 14.
제6차 개정 : 2014. 12. 17.
제7차 개정 : 2016. 11. 18.
제8차 개정 : 2017. 9. 1.
제9차 개정 : 2018. 2. 28.
제10차 개정 : 2018. 11. 5.
제11차 개정 : 2019. 12. 6.
제12차 개정 : 2020. 12. 30.
제13차 개정 : 2021. 12. 7.
제14차 개정 : 2022. 12. 8.
[제15차 개정 : 2023.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회계규정에서 위임된 계약관련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따르는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임대용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대사업시행요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요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무역보험기금”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4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공사가 별도로 구매, 공급하는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제한경쟁입찰"이라 함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공사가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8.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전자조달"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공사 및 용역 포함) 또는 매각하거나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11.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요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제5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준수)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행위 제공 포함)을 주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따른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함께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의4(위험성평가의 실시 의무)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의5(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사전검토)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발주 시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의 장 또는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 등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직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본사의 계약담당부서장, 지방 소재 부서의 부서장, 기타 지사의 지사장(출장소장, 사무소장, 국외사무소장, 국외주재원포함) 및 개설준비위원장이 된다. 다만, 본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수의계약(제36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의계약, 제17조의7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 및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팀장을 계약담당자로 한다.

1.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2. 용역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 대외 홍보, 복리후생 및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4. IT자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사의 계약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8조(추정가격의 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가 별도로 구매·공급하는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비치) ① 예정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 금액 또는 총 제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8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1항 제5호 가목·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9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2조에 따른 개산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공사가 인정할 가격
 4.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조사한 원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의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 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

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한다.

제1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 제조,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7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여,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 가격

⑥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⑦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백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 100분의 6

⑧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백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이윤율의 적용으로 계약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 및 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⑨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⑩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9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9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9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⑪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13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기관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요강 및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5조(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예정가격의 변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3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7조(경쟁 방법) ① 사장 또는 그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요강에 의한 입찰방법

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④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요강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⑤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인 기업 인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포함)
2. 녹색인증물품
3. 중소기업(여성기업 인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포함)
4. 국가유공자 기업 인증
5.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1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 ① 입찰대상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입찰시 공표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른 경우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추정가격 10백만원 이상의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물품 및 용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마.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의4(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을 고시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사에 구매 또는 공사계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5(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

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계약방법의 특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7(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한 수요물자를 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 및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제17조의8(계약의 검토) 계약담당자는 제17조 내지 제17조의5 또는 제35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계약 주요사항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 및 확인한 후 관련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상거래 계약건
2. 제35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3. 제5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계약으로 30만원 이하의 계약건

제17조의9(국제상관례의 적용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자격요건의 증명·확인)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일 것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월 납부증명서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를 완납한 자.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라.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요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입찰참가자격요건증명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21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 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용역 등에 대하여 이 요강 또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자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2조(공사의 입찰)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7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제23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관련서류(용역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포함)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8조 제2항·제3항,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24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 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각할 경우
 -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 ④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 2. 제43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3. 제5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⑤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경매) 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매각을 위한 경매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은 제외한다.

- 1. 청소용역
 - 2. 검침용역
 -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제1항 단서 각 호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부대입찰)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1항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 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의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 연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제28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미만인 계약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고시금액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10억원
 - 다.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 7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8.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9.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0.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로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
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43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
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자 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③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2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지명기준) ①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 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5. 공로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 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 가.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과 통지) ①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3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 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 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ㄷ.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나. 국외지사, 주재원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6.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공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의2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공사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3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강」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의 임원 및 해당 계약담당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재공고입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등) ①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⑥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제3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해당낙찰자의 낙찰단가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해당낙찰자의 낙찰단가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

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7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마목·사목·아목,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35조 제1항 제5호 가목 5) ㄱ부터 ㄷ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 제5호 가목 5) ㄱ부터 ㄷ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과 일반 상관습에 의거 견적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계속공사(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9조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1조(입찰공고)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요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3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내용)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22조의 제7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⑤ 제4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⑥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제4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제48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공동계약, 우편입찰, 희망수량입찰, 부대입찰, 대안입찰, 일괄입찰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5.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6.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16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의 입찰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 나.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명세서
 - 다. 대형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 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관련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입찰방법)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

제한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 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

- 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마.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사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9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22조 제4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7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⑤ 제4항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8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물품의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의 경우 「조달청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제49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타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자 결정)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④ 협상순서는 제3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

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51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3조(경쟁입찰 낙찰자 결정의 예외사항)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8조 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8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8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 ·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⑧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4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8조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5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서식 등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7 내지 9, 계약예규 따른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5조의 내용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경매에 붙일 경우
3. 물품의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④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55조의2(비밀유지협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 등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정보의 제공목적, 비밀정보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6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요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수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기계,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제5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4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

한다.

제57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기간 중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제46조, 제5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제46조 제2항 제1호, 3호, 4호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공사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

-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보증보험 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의한 조사송납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으로 특별히 정한 의무

제58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공사의 소유유가증권으로 귀속조치한다. 이 경우 등록국체에 있어서는 그 뜻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이를 귀속처리한다.
3. 보증보험증권 등의 경우에는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4. 보증금예치증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③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반환시기)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요강에 의하여 납부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5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1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감독 및 검사)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

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⑨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⑪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대가의 지급 및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와 국가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8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대가의 지급 시 4대 사회보험료 등 납부(완납) 사실 확인)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제조·용역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증

명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보험료 고지서로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증빙하면, 공사는 고지서 하단 계좌 또는 공단 관할지사 관리계좌로 체납보험료 입금 후 잔액에 대해 계약상대방 앞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제조·용역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각각 제출받아야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64조(선금의 지급)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제7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선금의 사용 등)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9호 서식의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선금의 반환청구)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의4(선금지급조건)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5조(대가의 수납)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용역의 공급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
- ② 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이자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계회사로서 그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공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상하수도 관로 매설 및 기기 설치 : 3년
 2. 조정시설물 및 조정식재 : 2년
 3. 기타 토목공사 : 1년
 4.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5. 건축물중 기둥 또는 내력벽 이외의 주요 구조부 : 5년
 6. 건축물중 4호 및 5호 이외의 기타부분 : 1년
 7. 실내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제작·설치 : 1년
 8. 지붕, 방수,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 3년
 9. 석공사, 조적, 일반 철물공사 : 2년
 10. 급배수, 공동구, 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기타 건물내 설비 : 2년
 11. 승강기 또는 주차리프트 등 인양설비 : 3년
 12.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장기 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철거 및 해체공사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조경식재, 소방공사 제외)
3.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6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변전 및 발전설비,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상하수도 관로, 하천·일반 건축공사 등 : 100분의 3
3. 1호 및 2호 이외의 공사 : 100분의 2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또는 제46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66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66조 제3항의 공사

⑥ 제46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8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제5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제조·용역 또는 그 밖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제69조의2(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공사·제조·용역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0조(장기계속계약 및 단가계약)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경비·청소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 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 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1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2조(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사,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제4항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3조(종합계약) 동일 장소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4조(공동계약)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공동계약 구성원 포함)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의 10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75조(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6조(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7조(지체상금)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 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 구매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체상금 지급 각서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8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7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체상금이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7조 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 내지 제1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한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서 정한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항에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8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제7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⑤ 제74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제7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7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⑩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⑪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10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의2(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7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처분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적절한 이행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담당부서 담당 본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의2(심의요구) 계약담당자는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계약담당부서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내부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2인으로 한다.
 - 가. 계약담당부서장
 - 나. 사업담당부서장
 - 다. 감사실장
 - 라. 법무담당부서장
 - 마.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외부위원은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업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로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내부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0조의5(결과통보) 계약담당부서장은 위원회 결과를 심의요청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6(위원의 결격사유·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해당 계약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2.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이해관계자는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및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0조의7(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0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안·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의9(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2. 회의 안건 및 경과요지
3. 회의 결과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의사록은 계약담당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80조의10(위원의 수당) 외부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6장 보칙

부칙(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관계규정의 폐지) 이 요강의 시행일로부터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적격 심사기준”은 폐지한다.

부칙(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시행일) 이 요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시행일) 이 요강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시행일) 이 요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시행일) 이 요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시행일) 이 요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시행일) 이 요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시행일) 이 요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시행일) 이 요강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시행일) 이 요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시행일) 이 요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과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당사에
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
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
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
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으며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직 임직원 유관자 또는 퇴직 임직원이 당사의 임직원
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시 자진신고 하겠으며, 해당 임직원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을 자
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찰과 계약과정 중의 불이익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금품수수 등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본 사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공정계약 서약서

본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의 물품(제조)구매·용역·공사 등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전 과정(계약종료 이후 포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
4. 예정에 없는 과업 및 추가 과업을 부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의 제기 권한 및 비용 청구권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겠다.
5. 추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산정시 적정가격을 적용하여, 저가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겠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다.

20 . . .

부 서 명 :
직 위 :
서 약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한국무역보험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명	
-----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퇴직자 성명	계약업체 기준 현재 직위(직급)	계약업체 기준 입사일

2. 당사는 상기 퇴직자 영입현황에 근거하여, 공사가 ① 공사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③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포함)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사 내규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 (금 정,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 (금 정, 계약금액의 %)
계 약 기 간	
<p>본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서, 본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가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위 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p>	

[별지 제6호 서식]

지체상금 지급각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 (금 정, 부가세 포함)
지 체 상 금	₩ (금 정,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계 약 기 간	
<p>본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가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위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년 월 일</p> <p>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p>	

[별지 제7호 서식]

선금 지급 신청서

1. 선금 지급 신청 내역

계 약 명	
계 약 금 액	₩ (금 정, 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선금신청액	

2. 선금 사용 계획

내 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본인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선금지급각서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공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내역서”를 귀 공사에 제출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6.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7.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공사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귀 공사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8.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하여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선금사용내역서

1. 계약명 :
2. 계약기간 :
3. 정산내역
 - 선금신청액 :
 - 선금집행액 :

구분	선금신청액(A)		선금집행액(B)		증감 (B-A)
	산출단가	금액(원)	산출단가	금액(원)	
합 계					

상기와 같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계약 주요사항 검토표

구 분	적용	세부사항
1.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의 결정(제9조)		
가. 예정가격의 작성(①항~④항)		
나. 예정가격의 작성 생략(⑤항)		
②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0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17조의2 ①항)		
② 직접생산 확인(제17조의2 ②항)		
③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7조의3①항)		
④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17조의3 ②항)		
⑤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17조의5)		
⑥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제17조의5 ③항)		
3. 계약의 방법		
① 경쟁입찰계약(제17조 ②항)		
② 수의계약(제35조 ①항 각호, 제36조 ①항 각호)		
가.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제37조)		
-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①항)		
- 1인 견적서 제출(①항 각호)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②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예외 (②항 각호)		
나. 직접생산 확인(제35조 ②항 2호)		
③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17조의4 ①항)		
④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예외(17조의4 ①항 각호)		
⑤ 계약의 특례(제17조의6)		
4. 계약의 체결		
① 계약서 작성(제55조)		
가. 계약서 작성(①~②항)		
나. 계약서 작성의 생략(③항)		
② 계약보증금(제56조)		
가. 계약보증금의 납부(①~④항)		
- (물품 및 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		
나. 계약보증금의 면제(⑤항)		
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⑥항)		
③ 선금의 지급(제64조)		

가. 공사(③항 1호)		
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③항 2호)		
다. 수해복구공사(③항 3호)		
④ 선금의 지급 관련 서류 제출(제64조)		
가. 선금 보증서 또는 증권(⑦항)		
나. 선금지급각서(①항)		
다. 선금지급신청서(①항)		
⑤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제60조)		
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5%) 납부(①항 1호)		
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①항 2호)		
-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50% (예정가격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⑥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66조)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①~②항)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생략(③항)		
⑦ 하자보수보증금(제67조)		
가.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①~②항)		
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⑤항)		
다.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또는 증권(③항)		
⑧ 지체상금(제77조)		
가. 계약유형별 지체상금률(②항)		
- 공사 :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5. 기타 (기본서류 포함)		
① 부정당업자 조회(제79조)		
② 청렴계약 이행각서(제5조의2)		
③ 공정계약 서약서(제5조의2)		
④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제19조의2)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가. 납세증명서 제출(제63조의2 ③항)		
나. 납세증명서 제출면제(제63조의2 ③항 각호)		
⑥ 지체상금 지급각서(제77조)		
⑦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35조의2)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35조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강」 별지 제9호 서식)		
⑨ 4대 보험 완납증명서(제63조의2)		
⑩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확인(제19조, 제40조)		
⑪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검토서(제5조의5)		

보안·청렴서약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계약심의위원회)

1. 본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의 내용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 심의의결 업무를 집행하고,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건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 선임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결격사유
1. 해당 계약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2.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 년 월 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속		성명	서명
	기관명	직위		

